

대부업·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(□ 법인 / □ 개인)			
신 고 인	① 명칭(상호)		② 대부업·대부중개업 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	④ 법인등록번호
	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		⑥ 설립일
	⑦ 소재지		
	⑧ 홈페이지 주소		
	⑨ 전화번호(영업소)	⑩ 전화번호(휴대전화)	
	⑪ 광고용 전화번호		
	⑫ 대표자 주소		
<p>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·대부중개업 폐업을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년 월 일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신청인(대표자) ⑪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하</p>			
구 비 서 류	신청인 제출서류		확인사항
	1. 대부업·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. 주민등록등본(개인의 경우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 3. <삭제> 4.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(대리 신고의 경우)		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,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(또는 금융감독원 직원)이 확인
<p>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신청인(대표자) ⑪ </p>			